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50
----------	-------

발의연월일 : 2026. 4. 20.

발 의 자 : 이수진·김 윤·한창민
남인순·전진숙·박홍배
박희승·서미화·송옥주
장종태·민병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1급·2급 장애를 가진 자와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종전의 3급 장애인은 현행법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었고,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보다 낮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명시(안 제2조제1호)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및 소득·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안 제8조제2항)
- 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개선(안 제10조제2항)

등)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같은 법 제2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하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 제2항에 따른 신청 간주 및 동의의 방법·절차”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3.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8조제1항에”로, “신청”을 “신청(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에도”를 “제4항에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및 제4항에 따른 안내 방법·절차 등에”를 “등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8조제3항(제10조의2제5항에서”를 “제8조제2항(제10조의2제4항에서”로,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

험정보”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연금의 신청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한다.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3.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삭 제>

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 제2항에 따른 신청 간주 및 동의의 방법·절차-----

-----.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생략)

<신설>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

-----제8조제1항에-----
-----신청(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생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제2항의 통지는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2. (생략)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① ~ ③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략할 수 있다.

③ -----
-----제1항
및 제2항에-----

-----.

④ -----
-----제3항의-----

-----.

⑤ -----
-----제4항에도-----

-----.

1. 2.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의 시기 및 제4항에 따른 안내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제8조 제3항(제1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④ -----

--제3항, -----
-----.

⑤ -----

-----등에-----
-----.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제8조
제2항(제10조의2제4항에서-----

<신 설>

② ~ ⑦ (생 략)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
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